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2000호 2026. 5. 18.(월)

차 례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에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3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공촌천 제방도로 개선공사]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55호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19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2000호 2026. 5. 18.(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58호 도로구역(광역시도50호선) 결정(변경), 도시관리 계획(도로: 대로2-6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사업인정(의제) 의견 청취 공고·열람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64호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30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상섭

2026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11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제2조제1호 관련, 제4조제2항 관련)

연번	실·국명 (소속기관명)	부서명	주요 직무 내용	제한 부동산의 범위
1	행정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개발 업무 수행	직무와 관련된 서구 관내 부동산
2	검단기획 행정국	검단행정과	- 농지 관리 및 농지전용허가 업무 수행 - 공장설립승인 업무 수행 - 도로 건설공사 업무 수행 -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 수행	
3	검단경제 보건국	검단경제교통과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설립승인 업무 수행	
4	검단안전 환경도시국	검단도시건축과	-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 수행 - 공원 조성 업무 수행	
5		검단공원녹지과	산림의 개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택지개발 등에 따른 산지전용 및 보전산지 해제 허가(협의) 대상 부동산	
6	환경국	환경관리과	-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	
7		생태하천과	- 생태하천 복원 및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 수행	
8		공원녹지과	- 공원 조성 업무 수행 산림의 개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택지개발 등에 따른 산지전용 및 보전산지 해제 허가(협의) 대상 부동산	
9	경제국	경제정책과	- 농지 관리 및 농지전용허가 업무 수행	
10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설립승인 업무 수행	
11		토지정보과	-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 수행	
12	도시주택국	도로과	- 도로 건설공사 업무 수행	
13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 수행	
14		건축과	-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 수행	
15		주택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 수행	
16		도시재생경관과	- 도시재생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 수행	

※ 직제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93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촌천 제방도로 개선공사]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하천관리청이 아닌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사항

1. 하천공사의 명칭: 공촌천 제방도로 개선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연희파크 주식회사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1810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공촌천 제방 및 사면을 정비
 - 나. 개 요: 흙콘크리트포장(764㎡), 왕벚나무식재(95주), 태양광 가로등(15EA), 운동시설(6EA), 휴게시설 등
4. 하천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243번지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2026. 5.18. ~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1	연회동	428-243		유	20,236.0	2,763.3		국유지					
2	연회동	428-170		제	2.0	2.0		시, 도유지					
3	연회동	428-209		답	11.0	11.0		시, 도유지					
4	연회동	428-167		제	285.0	285.0		시, 도유지					
5	연회동	428-192		답	126.0	126.0		시, 도유지					
6	연회동	428-168		천	310.0	23.19		시, 도유지					
7	연회동	428-166		천	253.0	224.6		시, 도유지					
8	연회동	428-165		제	302.0	302.0		시, 도유지					
9	연회동	428-191		답	89.0	89.0		시, 도유지					
10	연회동	428-172		천	22.0	22.0		시, 도유지					
11	연회동	428-171		제	282.0	282.0		시, 도유지					
12	연회동	428-202		제	91.0	91.0		시, 도유지					
13	연회동	428-135		제	289.0	289.0		국유지					
14	연회동	428-164		제	126.0	126.0		시, 도유지					
15	연회동	428-201		제	79.0	79.0		시, 도유지					
16	연회동	428-163		제	10.0	10.0		시, 도유지					
17	연회동	428-136		제	4.0	4.0		국유지					
18	연회동	428-200		제	92.0	92.0		시, 도유지					
19	연회동	428-161		제	87.0	87.0		시, 도유지					
20	연회동	428-162		천	8.0	8.0		시, 도유지					
21	연회동	428-160		천	61.0	61.0		시, 도유지					
22	연회동	428-159		제	143.0	143.0		시, 도유지					
23	연회동	428-199		제	112.0	112.0		시, 도유지					
24	연회동	428-138		제	26.0	26.0		국유지					
25	연회동	428-198		잡	28.0	28.0		시, 도유지					
26	연회동	428-137		제	434.0	434.0		국유지					
27	연회동	428-158		제	10.0	10.0		시, 도유지					
28	연회동	428-133		제	21.0	21.0		시, 도유지					
29	연회동	428-189		잡	15.0	15.0		시, 도유지					
30	연회동	428-188		답	167.0	167.0		시, 도유지					
31	연회동	428-132		제	113.0	113.0		시, 도유지					
32	연회동	428-210		답	188.0	188.0		시, 도유지					
33	연회동	428-130		제	233.0	233.0		시, 도유지					
34	연회동	428-131		천	6.0	6.0		시, 도유지					
35	연회동	428-129		천	49.0	49.0		시, 도유지					
36	연회동	428-128		제	276.0	276.0		시, 도유지					
37	연회동	428-187		답	203.0	203.0		시, 도유지					
38	연회동	428-196		답	83.0	83.0		시, 도유지					
39	연회동	428-156		제	49.0	49.0		시, 도유지					
40	연회동	428-157		천	1.0	1.0		시, 도유지					
41	연회동	428-205		유	698.0	698.0		국유지					
42	연회동	428-140		제	844.0	844.0		국유지					

43	연회동	124-148		천	1,072.0	104.9		시, 도유지					
44	연회동	124-145		천	1,265.0	127.3		시, 도유지					
45	연회동	428-142		천	1,341.0	428.9		국유지					
46	연회동	166-32		천	169.0	112.6		시, 도유지					
47	연회동	166-31		제	168.0	168.0		시, 도유지					
48	연회동	166-49		답	176.0	176.0		시, 도유지					
49	연회동	166-48		답	164.0	164.0		시, 도유지					
50	연회동	166-28		제	240.0	240.0		시, 도유지					
51	연회동	166-29		천	979.0	266.6		시, 도유지					
52	연회동	166-26		천	1,166.0	318.3		시, 도유지					
53	연회동	166-25		제	472.0	243.1		시, 도유지					
54	연회동	166-47		답	307.0	179.1		시, 도유지					
합 계					33,983.0	11,413.6							

7. 기타사항: 관련서류는 서구청 생태하천과(☎032-560-0913)에 비치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9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폐지 1건

구분	위치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폐지	가정동 499-4	가정로380번길 29-8가정동)	2026. 5. 18.	건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공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2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체제개편 시행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현행화 하고, 의안 제출의 주체를 직무 중심으로 개선하여 심의회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의회 당연직 위원 현행화(안 제2조제3항)
- 나. 의안제출의 주체(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예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62, 팩스 032-560-274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행정체제개편 시행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현행화 하고, 의안 제출의 주체를 직무 중심으로 개선하여 심의회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의회 당연직 위원 현행화(안 제2조제3항)
- 나. 의안제출의 주체(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경제환경국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법무과”를 각각 “심의회 운영 총괄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예산법무과장”을 “심의회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p> <p>1.·2. (생략)</p> <p>2의2. <u>검단기획행정국장</u></p> <p>2의3. <u>검단경제보건국장</u></p> <p>2의4. <u>검단안전환경도시국장</u></p> <p>3. (생략)</p> <p>4. <u>환경국장</u></p> <p>5. <u>경제국장</u></p> <p>6. ~ 8. (생략)</p>	<p>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2. (현행과 같음)</p> <p>2의2. <삭제></p> <p>2의3. <삭제></p> <p>2의4. <삭제></p> <p>3. (현행과 같음)</p> <p>4. <u>경제환경국장</u></p> <p>5. <삭제></p> <p>6. ~ 8.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안제출등) ① 의안은 실·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u>예산법무과</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소장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u>예산법무과</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⑤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u>예산법무과</u>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⑥ ~ ⑧ (생략)</p>	<p>제7조(의안제출등) ① ----- ----- <u>심의회 운영 총괄 부서</u>-----.</p> <p>② ----- -----</p> <p><u>심의회 운영 총괄 부서</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심의회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u>----- ----- -----.</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2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별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21의4” 를 “별표21의7” 로 한다.

3. 의견제출

-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차량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875, 팩스 032-560-279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별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4조 제2항의 인용 별표를 “별표21의4”에서 “별표21의7”로 정비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21의4”를 “별표21의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u>별표21의4</u>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p>	<p>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p> <p>② ----- ----- <u>별표21의7</u> ----- ----- -----.</p>

관계법령 발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9. 6., 2023. 5. 25., 2025. 4. 28.>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255호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5. 18. ~ 2026. 6. 1. 까지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4. 공고사항
 - 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였습니다.
 - 나.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의2호에 따라 운행정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따라 직권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임시운행 하실 수 있으며, 임시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4892)

[붙임] 자동차운행금지명령 공고 대상

연번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사유	운행금지명령 등록일
1	87가3329	봉고프런티어	**진	검사 미필	2026.05.18.
2	60라9580	CLS350	**봉	검사 미필	2026.05.18.
3	17수4981	오피러스	**석	검사 미필	2026.05.18.
4	04소4081	레인지로버 벨라 D300	**이	검사 미필	2026.05.18.
5	63서6537	G80	*****사	검사 미필	2026.05.18.
6	32다2313	질 랭글러	**수	검사 미필	2026.05.18.
7	60마6611	스파크 1.0 DOHC	**경	검사 미필	2026.05.18.
8	82나4663	한성9.5톤카고	**현	검사 미필	2026.05.18.
9	95마0487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택	검사 미필	2026.05.18.
10	288서8260	카니발	**성	검사 미필	2026.05.18.
11	22너9522	Bentley Flying Spur W12	*****크	검사 미필	2026.05.18.
12	309무3755	K7	*****업	검사 미필	2026.05.18.
13	152고8752	GV80	*****강	검사 미필	2026.05.18.
14	99노4826	이에이치엘씨캠핑트레일 러	**강	검사 미필	2026.05.18.
15	20조3117	크루즈 1.8 DOHC	**훈	검사 미필	2026.05.18.
16	97조3817	신화일반화물운송트레일 러	**기	검사 미필	2026.05.18.
17	82루2680	포터 II (PORTER II)	**환	검사 미필	2026.05.18.
18	57보5313	MINI Cooper S	**섭	검사 미필	2026.05.18.
19	19라4739	QM5	*****스	검사 미필	2026.05.18.
20	94조0388	마이티워바디	**윤	검사 미필	2026.05.18.
21	인천98바1935	제이에스로드스터2언더리 프트	*****카	검사 미필	2026.05.18.
22	232저6092	그랜저(GRANDEUR)	*****사	검사 미필	2026.05.18.
23	62수5927	ML63 AMG	**준	검사 미필	2026.05.18.
24	96모9497	D.K보트트레일러	**중	검사 미필	2026.05.18.
25	71마9626	그랜드 카니발	**용	검사 미필	2026.05.18.
26	96더6753	이-마이티	**준	검사 미필	2026.05.18.

연번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사유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27	97부9667	봉고Ⅲ 1.2톤	**림	검사 미필	2026.05.18.
28	20고3471	싼타페(SANTAFE)	**현	검사 미필	2026.05.18.
29	21오5655	K7	**준	검사 미필	2026.05.18.
30	24오6153	스파크밴 1.0	**우	검사 미필	2026.05.18.
31	25머4567	S4 3.0 TFSI quattro	**태	검사 미필	2026.05.18.
32	265머8888	BMW 520d	**형	검사 미필	2026.05.18.
33	26노8349	렉서스 ES350	**영	검사 미필	2026.05.18.
34	35루9222	A7 3.0 TDI quattro	**성	검사 미필	2026.05.18.
35	15나0465	QM3	**정	검사 미필	2026.05.18.
36	18로6211	K5	**중	검사 미필	2026.05.18.
37	24마4441	레인지로버 벨라 D300	*****)	검사 미필	2026.05.18.
38	266무8677	카니발 하이리무진	**태	검사 미필	2026.05.18.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258호

도로구역(광역시도 50호선)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6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사업인정(의제) 의견청취 공고·열람

광역시도 50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1호선) 【사업명: 인천검단택지개발사업 지구외 도로(대2-61호선)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해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열람합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로구역(변경)

○ 도로구역 결정 내용(변경)

①구분	②종 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결정 (기정)	광역시도	50	왕길~평동 선	당하동 748-9일원	9,862.5	서구 당하동 748-8	서구 당하동 750-18	검단 신도시	전체: 12.24 (0.3)
결정 (변경)	광역시도	50	왕길~평동 선	당하동 748-9일원	9,916	서구 당하동 748-8	서구 당하동 750-18	검단 신도시	전체: 12.24 (0.3)

* () 금번 변경 결정 구간 : 0.3km

- (사유)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사업명(변경 없음)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지구외 도로(대2-61호선) 확장공사

○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 2025. 7. 28. ~ 2027. 12.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사유)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 [별도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61	30 (30~60)	주간선 도로	12,004 (300)	계양구 평동 25-5	광 3-25	일반 도로	-	인고 1998-118 (1998.6.12.)	
변경	대로	2	61	30 (30~60)	주간선 도로	12,035 (300)	계양구 평동 25-5	서구 왕길동 63-9	일반 도로	검단 신도 시	인고 1998-118 (1998.6.12.)	면적변경

* () 폭원 및 연장은 금회 사업 시행하는 구간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61	대로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사업 시행구간 면적 변경 - (면적변경 : 증53.5㎡) • 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오기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도로(대2-61호선) 확장공사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26호 반영

3. 실시계획인가

○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748-9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1호선)사업
- 명칭: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도로(대2-61호선) 확장공사

○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당초)

- 면적: 9,862.5㎡
- 규모: L=300m, B=30m (4차로→6차로 확장)

(변경)

- 면적: 9,916㎡
- 규모: L=300m, B=30m (4차로→6차로 확장)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25. 7. 28. ~ 2027. 12.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도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지구외 도로(대2-61호선) 확장공사」로
구성되는 도로 및 그 부속 시설물

4. 관계서류(도면)의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26.5.4. ~ 2026.5.18.)
○ 의견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3, 남동구 정각로 29)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560-8273, 서구 원당대로 929)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4, 서구 서곶로 307)

6.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붙임 토지세목조서 1부. 끝.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될 토지의 세목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²)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현황		
계	기정	-	16필지	-	15,220.0	9,862.5	-	-	-	-	-	-	
	변경	-	20필지	-	9,916.0	9,916.0	-	-	-	-	-	-	
1	기정	서구 당하동	748-8	도	46.0	46.0	1	인천광역시	-	-	-	-	
2	기정	서구 당하동	748-9	도	5,493.0	3,714.0	1	인천광역시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변경	서구 당하동	748-12	도	20.0	20.0	1	인천광역시	-	-	-		
3	기정	서구 당하동	748-13	도	3,680.0	3,680.0	1	인천광역시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변경	서구 당하동	750-5	구	256.0	37.9	1	국토교통부	-	-	-		
4	기정	서구 당하동	750-2 3	구	37.0	37.0	1	국토교통부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5	기정	서구 당하동	750-6	도	2,337.0	2,337.0	1	인천광역시	-	-	-	-	
6	기정	서구 당하동	750-1 8	도	112.0	112.0	1	인천광역시	-	-	-	-	
	변경	서구 당하동	750-2 0	도	1,180.0	1,163.0	1	국토교통부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7	기정	서구 당하동	750-2 4	도	1,162.0	1,162.0	1	국토교통부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변경	서구 당하동	750-2 1	도	174.0	174.0	1	국토교통부	-	-	-	-	
8	기정	서구 당하동	840-5	임	1,716.0	311.0	1	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변경	서구 당하동	840-1 9	임	311.0	311.0	1	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9	기정	서구 당하동	840-18	임	222.0	38.0	1	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변경	서구 당하동	840-21	임	38.0	38.0	1	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10	기정	서구 당하동	840-6	임	1,867.0	719.5	1	인천** *****	인천 송림동 **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변경	서구 당하동	840-20	임	724.0	724.0	1	인천** *****	인천 송림동 **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11	기정	서구 당하동	840-8	도	74.0	74.0	1	인천광역시	-	-	-	-	
12	기정	서구 당하동	841	도	13.0	13.0	1	인천광역시 서구	-	-	-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²)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현황		
13	기정	서구 당하동	841-3	도	65.0	12.3	1	재***** *****	인천시 중구 답동 *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변경	서구 당하동	841-5	도	13.0	13.0	1	재***** *****	인천시 중구 답동 *	-	-	-	
14	기정	서구 당하동	842-2	답	523.0	20.8	2/5	허*무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1/5	허*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번길 **	-	-	-	
							1/5	허*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번길 *	-	-	-	
							1/5	허*무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	-	-	
	변경	서구 당하동	842-4	답	15.0	15.0	2/5	허*무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	-	-	
							1/5	허*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번길 **	-	-	-	
							1/5	허*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번길 *	-	-	-	
							1/5	허*무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	-	-	
	변경	서구 당하동	842-5	답	5.0	5.0	2/5	허*무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	-	-	
							1/5	허*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번길 **	-	-	-	
							1/5	허*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번길 *	-	-	-	
							1/5	허*무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	-	-	
15	기정	서구 당하동	산152 -1	묘	110,276.0	49.5	1	재***** *****	인천시 중구 답동 *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²)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현황		
15	변경	서구 당하동	산152-13	묘	29.0	29.0	1	재***** *****	인천시 중구 답동 *	-	-	-	분할 측량 결과 반영
	변경	서구 당하동	산152-14	묘	20.0	20.0	1	재***** *****	인천시 중구 답동 *	-	-	-	
16	기정	서구 당하동	산177-8	입	26,866.0	1,040.5	1/3	김*석	서울 강남구 청담동 **	한국 전력 공사	서울 강남 구 삼성 동 167	지상 권설 정, 임차 권설 정	분할 측량 결과 반영
							1/3	김*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1/3	김*걸	서울 강남구 청담동 **				
	변경	서구 당하동	산177-10	입	1,094.0	1,094.0	1/3	김*석	서울 강남구 청담동 **	한국 전력 공사	서울 강남 구 삼성 동 167	지상 권설 정, 임차 권설 정	
							1/3	김*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1/3	김*걸	서울 강남구 청담동 **				
	변경	서구 당하동	산177-11	입	12.0	12.0	1/3	김*석	서울 강남구 청담동 **	한국 전력 공사	서울 강남 구 삼성 동 167	지상 권설 정, 임차 권설 정	
							1/3	김*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1/3	김*걸	서울 강남구 청담동 **				

사업인정의견서

사업명	인천검단택지개발사업 지구외 도로(대2-61호선) 확장공사	
사업예정지	서구 당하동 748-9번지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도로구역 (광역시도 50호선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도 로 대로2-61호선 결정강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자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264호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2. 제안이유

- 본 규칙은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사용권 등의 금권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세 및 사용료 등 수입금은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이를 수납할 수 없으며, 입장권·사용권 등의 금권을 발간·사용·보관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을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재무과, 전화 032)560-5021, 팩스 032)560-27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폐지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폐지규칙안

1. 제안이유

본 규칙은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사용권 등의 금권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세 및 사용료 등 수입금은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이를 수납할 수 없으며, 입장권·사용권 등의 금권을 발간·사용·보관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폐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실 합의
- 라. 기 타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징수법

제23조(납부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 3. 14.>

-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2023. 3. 14.>

③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3. 3. 14.>

④ 삭제 <2018. 12. 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④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수납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2.>

②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징수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공무원이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 없는 섬·외딴곳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하는 경우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